

국가인권위원회 구제제도 개괄 및 진정 계획

“기후위기는 인권 문제다”

사단법인 두루 지현영 변호사

2020. 11. 26.



사단법인두루

목차

1.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제도
2. 국가인권위원회 기능 개괄
3. 진정계획
4. 진정인 참가 방법

1.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제도

1. 진정사항 및 절차

■ 진정 사항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초·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와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또는 구금·보호시설의 업무 수행(국회의 입법 및 법원·헌법재판소의 재판은 제외한다)과 관련하여 「대한민국 헌법」 제10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에서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하거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 법인, 단체 또는 사인(私人)으로부터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 진정 절차

1. 인권상담 방문상담 및 전화상담이 가능합니다.	2. 진정접수 홈페이지, 방문, 우편, 전화, 팩스, 이메일 등으로 가능합니다.	3. 사건조사 진정사건은 담당 조사관이 배정된 후 조사를 진행합니다.	4. 위원회의결 권고, 기각, 각하, 합의권고, 이송 등의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5. 당사자통보 심의의결후, 진정인에게 사건처리결과통지서를 송부합니다.
---------------------------------------	--	--	---	---

2. 진정의 효과

- **인권침해나 차별행위 인정 시**
 - 구제조치
 - ✓ 조사대상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의 중지
 - ✓ 원상회복, 손해배상, 그 밖에 필요한 구제조치
 - ✓ 동일하거나 유사한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 관련 법령·제도·정책 또는 관행의 시정/개선 권고

- **기각/각하의 경우에도,**
 - 관련 법령·제도·정책 또는 관행의 시정·개선 권고, 조사·연구, 의견 표명 가능

2. 국가인권위원회 기능 개괄

2. 인권위원회의 기능

■ 정책

-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 법령·제도·정책·관행의조사·연구 및 개선 권고·의견 표명
- ✓ 국제인권조약 가입 및 조약의 이행에 관한 권고·의견 표명

■ 조사·구제

- 국가기관, 지자체 또는 구금·보호시설의 인권침해 조사·구제
- 법인, 단체 또는 사인(私人)에 의한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 조사·구제
- 성희롱 조사·구제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및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사·구제

■ 홍보

- 국민의식 향상을 위한 교육
- 인권문화 확산 및 홍보

3. 진정 계획

1. 피진정인, 침해행위

- 피진정인 : 대한민국 정부

- 대통령
- 정부 부처
- 소관기관

- 침해행위

- 대한민국 정부가 파리협정 및 IPCC 보고서가 제시하는 지구 기온상승의 임계치 도달을 방지하기 위해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시행하지 않고, 그로 인한 진정인의 생명권, 건강권, 행복추구권, 자기결정권, 직업의 자유, 거주 및 체류의 자유 등 인권 침해 상황에 대해 구제조치 또는 대응을 하지 않는 행위

2. 침해되는 기본권

■ 침해되는 기본권

- 헌법 제10조 :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생명권, 건강권, 자기결정권
- 헌법 제13조 : 거주·이전의 자유
- 헌법 제15조 : 직업의 자유

■ 침해되는 국제인권규범 상 기본권

- 생명권 (세계인권선언 제3조,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제6조 제1항, 아동권리협약 제3조)

ICCPR 생명권 일반논평 : "기후변화를 비롯한 환경오염, 지속불가능한 개발이 미래 세대의 생명권에 심각한 위협이며, 정부는 공적·사적 행위자가 야기하는 피해, 환경오염 및 기후변화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함으로써 생명권을 존중하고 보호할 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

-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ESCR) 상, 식량에 대한 권리, 물에 대한 권리, 건강권, 적절한 환경의 주거에서 생활할 권리
- 파리협정 전문 :인권 관련 의무가 UN기후체제의 필수 요소라는 점을 인정한 최초의 국제환경 협약

3. 진정한 사례

- 농민 (건강권, 생명권, 직업의 자유)
 - 예측이 어려운 이상 기후 및 재난의 증가로
 - ✓ 수확량 감소
 - ✓ 품질 하락
 - ✓ 품종의 변경
 - ✓ 토지 생산성 저하
 - ✓ 업종 변경의 위협
 - ✓ 용수 부족
 - ✓ 냉해 피해

 - 폭염 노동으로 인한
 - ✓ 열사병 등 질병
 - ✓ 사망

3. 진정한 사례

- 양봉업 종사자 (직업의 자유)
 - 이상기후로 인한 생산량 감소
- 어민 (직업의 자유)
 - 재난 재해 발생의 증가로 양식생물 대량 폐사
 - 해면 수온 상승 등에 의한 해양 생태계 변화로, 어획량 감소 및 어종 변화
 - 기후 변화에 따라 바다의 변동성이 증가하면서 계절마다 어민들이 해왔던 작업에 차질 발생
- 재난 피해자 (생명권, 행복추구권, 거주권, 자유)
 - 산불 피해
 - 폭우 피해
 - 가뭄 피해
 - 태풍/홍수 피해

3. 진정한 사례

- **노동자 (건강권, 생명권)**

- 폭염 노동으로 인한 생명과 건강 침해
- ✓ 청소노동자, 제철소노동자, 급식노동자, 배달노동자, 방송노동자, 공항노동자, 굴삭기 노동자, 가스검침원, 택배기사, 경비원 등
- ✓ 2020. 10. 29. 인권위, 건설노동자에 대한 “폭염 작업 중지시 임금보전 방안 마련 및 편의시설 휴게실 및 샤워실 추가” 권고 의결

- **쪽방촌, 고시원 거주자 (건강권, 생명권, 행복추구권. 적절한 환경의 주거에서 생활할 권리)**

- 폭염으로 인한 생명과 건강 침해
- 침수로 인한 피해

3. 진정한 사례

- 소비자 (자기결정권, 행복추구권, 건강권)
 - 우리 농수산물 가격 상승으로 인한 구매 저하
 - 농산물의 품질하락, 변경으로 인해 질 좋은 농산물을 먹지 못하는 것
 - 비료 사용 증가 등의 이유로 건강 우려
- 해수면 상승 영향 지역의 시민 (행복추구권, 생명권, 건강권, 적절한 환경의 주거에서 생활할 권리)
 -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재해 위험성 증가, 생명과 주거의 위협
- 건강 피해자, 기후우울증을 앓는 자 (건강권, 행복추구권)

4. 진정한 참가방법

진정한 참가 방법

■ 진정한 작성 및 제시 필요사항

- 신상정보 : 이름, 생년월일, 성별, 연락처, 주소

(신상 정보가 공개되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 대리인을 통해 소통 예정)

- 어떤 내용의 인권 침해를 당하였습니까? 때, 장소, 내용
- 피해자가 당한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 사실을 증명하는 데 도움이 되는 증거나 자료 제시

■ 참여하면 어떤 것이 변하나요?

-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는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한국의 행정·입법·사법부에게 공적 권위를 가진 문서로써 사회적 대화를 가속하게 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통해 정부기관의 중요한 정책 결정에 영향을 주고, 진정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피해사례 자료를 축적하고,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기후위기로 인한 인권침해의 사례와 가능성을 알리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Thank you



- | 장애인권
- | 아동·청소년인권
- | 국제인권
- | 사회적경제
- | 환경